

충청북도지역홍보대책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지역홍보대책협의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(상임위원대우)중 상임위원에게는 “월 487,000원”을 “월 531,000원”으로 하고 “월액수당과 월역수당의 400%에 해당하는 기말수당”을 월액수당과 월역수당의 400%에 해당하는 기말수당 및 월액수당의 100%에 해당하는 정근수당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1992. 1. 1부터 적용한다.

신 구조 대비 표

현	정
<p>제9조(상임위원대우) 상임위원에 계는 <u>월 487,000원의</u> 월액수당과 월액수당의 400%에 해당하는 기 말수당을 <u>지급한다.</u></p>	<p>제9조(상임위원대우) 상임위원에 계는 <u>월 531,000원의</u> 월액수당과 월액수당의 400%에 해당하는 기 말수당을 <u>지급하며 100%에</u> 해당 <u>하는 정근수당을 지급한다.</u></p>

- 위원장대리 김기환 수고하셨습니다.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전문위원 임홍식 전문위원 임홍식입니다. 충청북도지역홍보대책협의회회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.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공보판님이 앞서 보고드렸으므로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신다면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.